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용매뉴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학일자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



목차

1장. K+장단맞춤100 현장실습 프로그램	01
1. 현장실습 목적	01
2.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소개	02
2장. 현장실습 홈페이지 사용 안내	04
1. 가족회사 신청(신규신청)	05
2. 현장실습 신청(기존기업)	06
3. 학생선발	10
4. 선발자 관리	11
3장. Q&A	14
4장. 부록	15
1.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15
2. 현장실습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28

1장. K+장단맞춤100 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목적

전공지식을 갖춘 현장실습생을 통한 기업 애로문제 해결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 인재가 일정기간 동안 현장실습을 함으로써 기업의 애로문제 해결

I 사례: 표준현장실습을 통해 기업의 만성적인 애로문제를 해결한 F사

지역 중소기업인 F사는 회사 내 폐수 정화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매달 환경 검사에 지적을 당해 매달 벌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실습생이 지도교수와 Ph 및 SS농도와 폐수의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 후 폐수 정화시설의 오작동 원인을 찾아 오염도 수치를 감소시켜 기업 재정운영에 도움을 줌

우수 인력 조기 확보 및 체계적인 인력 검증으로 초기 재교육 비용 절감

- 전공분야의 기초 지식·기술을 갖춘 우수 인재 조기 확보
- 현장실습을 통한 인력 검증과정을 통해 취업 연계시 초기 재교육 비용 절감
- 취업 연계 후 실무 투입 가능

인재양성 및 지역사회 공헌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미지 제고

1장. K+장단맞춤100 현장실습 프로그램

K+장단맞춤100 현장실습 소개

대학일자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현장 적응력 및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인재로 성장하도록 다채로운 현장실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

'K+장단맞춤100'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의 독자적 브랜드로 표준·자율 맞춤형 현장실습을 통해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취업과 연계하겠다는 의미

학생: 실무능력향상 / 진로선택 도움 / 취업연계 기획

기업: 맞춤형 인재발굴 / 기업경쟁력 확보 / 기업이미지 향상

대학: 산학 맞춤형 인재양성 / 산학 교류 확대 / 대학취업률 증대

현장실습 지원자격

2학기 이상 수료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재학생

※ 졸업예정자는 졸업사정으로 신청 및 실습기간이 제한될 수 있음

현장실습 기업

- 5인 이상, 산재보험이 가능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기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소
- 정부기관 및 공기업
- 경제단체 및 사업주단체(비영리 법인)
- 학교 및 유치원(보육시설)
- 학교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별도 법인의 대학 부속기관 등

※ 1인기업, 5인 미만의 기업은 대학의 판단

1장. K+장단맞춤100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절차 및 신청방법

현장실습 홈페이지: krise.ut.ac.kr 에서 신청 및 접수(기업·학생)

※ 자세한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2장 현장실습 홈페이지 사용 안내」참조

※ 현장실습 신청은 특정기간이 아닌 상시에도 현장실습 희망 신청 가능(센터로 연락)



2장. 현장실습 홈페이지 사용 안내

현장실습기업참여 신청순서

현장실습 참여 **신규기업** → 가족회사 신청 순서로 진행

현장실습 참여 **기존기업** → 현장실습 신청 순서로 진행

현장실습 참여 **신규기업**

홈페이지 krise.ut.ac.kr → 로그인 → 기업 → 회원가입 → 가족회사 신청서 작성
→ 현장실습지원센터 승인요청 → 센터 승인 → 가입완료

가족회사 **가입**

현장실습 참여 신규기업은 현장실습 홈페이지 내 회원가입 후 가족회사 신청·승인 후
현장실습 신청 가능

The screenshot shows the K-RISE portal interface. At the top right, a red checkmark points to the '로그인' (Login) button. In the center, a login modal is open. A red checkmark points to the '기업' (Company) radio button, which is selected. Below it, the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Enter ID) and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Enter password) fields are visible. At the bottom of the modal, the '로그인' (Login)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the '회원가입' (Sign Up) button is also highlighted with a red box. The background features the K-RISE logo and the text 'MOVING FORWARD'.

2장. 현장실습 홈페이지 사용 안내

가족회사 신청서 작성(신규기업)

1. [사업자 등록]시 자동으로 **사업자번호가 ID**로 생성되며 **비밀번호는 ID와 동일** 생성
2. [기본정보-부가정보] 작성 시 [전체담당자, 담당자]를 지정하여 입력
3. [정보제공동의] 후 [가입신청] 버튼 클릭
4. 가입신청 후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승인요청(☎043-849-1715, 1783)

기업현황

가족회사 협약체결 신청서

기관 (법인)명 *		설립 연월일 *	
업체 (영문 기관명) *		사업자 등록번호 *	
비밀번호 *		비밀번호 확인 *	
업태, 업종		종업원수 *	명
매출액 *	원	자본금	원
주생산물 *			
한국표준 산업분류 코드 *			

부가정보

① 직인 이미지는 100 x 100으로 하셔야 협약서에 표시되는 서명이 깨지지 않습니다.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기업소개서	
직인 이미지 등록 *	

위와 같이 가족회사 협약체결을 신청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기업명 :
성명 : (인) 서명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가입신청	취소
------	----

2장. 현장실습 홈페이지 사용 안내

현장실습 신청(기존기업 및 신규기업)

현장실습 신청 기존기업 및 신규기업

홈페이지 krise.ut.ac.kr → 기업로그인 → 마이페이지 → 현장실습 요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 현장실습지원센터 승인요청 → 승인 → 신청완료

기업로그인

기업 로그인ID는 사업자등록번호("-"생략),PW는 가족기업 신청시 비밀번호와 동일



RISE 사업단 K-RISE 캠퍼스디자인 현장실습 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커뮤니티

마이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기업)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마이페이지 > 현장실습 > 현장실습요청서 작성

마이페이지(기업)

My 포트폴리오

All-Set 관리 현황

프로그램신청 참여현황

캠퍼스디자인

캠퍼스디자인 주제공모

현장실습

현장실습요청서 작성

학생 선발

기업정보 수정

현장실습요청서 작성

신청서작성

사전서면 점검서(승인)

기업명 참여유형 진행상태 년도 학기 실습기간 모집전공 모집인원 지원인원 선발인원

현장실습 신청

4대보험 납입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국민생활정보] - [고액·상습체납자공개]에서 관련 보험별 체납자 정보 확인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채용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	☐ 예 ☒ 아니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 예 ☒ 아니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체에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중 [공고]에서 확인 가능 (조외 시 '산업체' 또는 '산업체에 발생'으로 조회)	☐ 예 ☒ 아니요
사업장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불의를 야기한 사업장		☐ 예 ☒ 아니요
기타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 업체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 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산학협력단 ※ 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산학협력단은 실습기관에서 제외하나, 학교 및 산학협력단과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의 학교기업, 센터, 연구소 등은 실습기관으로 인정·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	☐ 예 ☒ 아니요
현장실습 형태	☒ 학교주도형(학교가 실습기관을 모집하는 경우) ☐ 실습기관 주도형(실습기관이 학교에 의뢰해서 학생을 받는 경우)	
참여유형	☒ 표준현장실습학기제(교육시간이 전체 10%~25%인 현장실습일 경우) ☐ 근로계약서 체결 ☒ 근로계약서 미체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자율현장실습학기제(교육시간이 전체 25%를 넘는 현장실습일 경우)	

확인

취소

자주찾는 메뉴

캠퍼스디자인

현장실습

사제품 제작

가족회사

프로그램 신청

닫기

2장. 현장실습 홈페이지 사용 안내

협약서 작성

현장실습요청서 작성예시 [협약서작성 → 서명 → 확인]

☛ > 마이페이지 > 현장실습 > 현장실습요청서 작성

마이페이지
(기업)

My 포트폴리오

All-Set 관리 현황

프로그램신청 참여현황

웹스톤디자인

웹스톤디자인 주제공모

현장실습

현장실습요청서 작성

학생 선발

선발자 관리

기업정보 수정

현장실습요청서 작성

표준 현장실습(Co-op) 협약서

본 협약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교육과정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습기관, 참여하는 학생, 운영 주최인 학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1조 (교육과정)

2025년도 학년도 선택 학기 선택 개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과정으로 운영한다.

제2조 (운영사항)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실습기관명: (주)두원전기소방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내용 및 지도 계획 등은 실습기관에서 학교에 기 제출한 교육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실습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학생별 실제 실습기간은 실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여 확정한다.

4. 실습시간 및 요일

가. 실습시간: 1일 선택 시간 / 선택 시 선택 분 ~ 선택 시 선택 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나. 교육시간 비율: 실습 시간의 선택 %로 한다.

다. 실습일수 및 요일: 주0일 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라. 교육과정 상 사전입학 및 종의 적자 않은 학년(명)을 모두 10시부터 6시까지(총 6시간)에 실시될 수 있다.

마.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시간 외 현장실습이 필요한 경우 1주 최대 5시간 한도로 사전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최대 5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부 고시 따라 본 협약서 외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운영하여야 한다.

5. 휴게 및 휴일

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1일 이상의 휴일 및 공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실습기간 중 학생의 공적 의무 수행일, 경조사일, 임원일 등의 휴일 활동을 보장한다.

나. 실습기관에서는 위 휴일 외 실습기관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6. 실습지원비 등

가. 실습기관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준수하여 월 기준 원(세전)을 선택 일 경에 학생별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학생이 중도 포기하거나, 중도탈락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대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나. 실습기관에서 연장·야간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장·야간 실습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지원비 외 해당 실습기관의 편의·복지 제도의 활용을 지원한다.

7. 실습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 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8.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법령」(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학교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학생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해당 보험에 따라 재해보험을 받는다.

9. 실습기관은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1주일 이내(학교 고지)에 제출한다.

10. 실습기관에서는 본 협약서 외 학생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는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및 지도계획은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해지 및 중단 등)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중 부득이하거나, 합당한 협약 해지 또는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 또는 학생은 학교와 협의한 후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상호 동의 및 합의하에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어 학생의 해당 학기 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와 합의하여 해당 실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실습기관을 연계하여 학생의 학기 이수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호협력 등)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호 및 성취후보인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습기관 및 학생, 학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상호 권리 및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제5조(방문 지도·점검)

학교에서는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기관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사항의 적합성을 방문·서면 등으로 점검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의 교직원인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및 점검 시 적극 협조한다.

제6조(출석·평가 및 서식 제출)

실습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의 출석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출석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 및 관련 제반 서식을 학교 현장실습홈페이지(<https://krise.ut.ac.kr>)를 통해 제출한다.

제7조(기타)

본 협약은 각 조항에 따른 사항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각각 서명 날인 후 상호 합의한 방법으로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12월 17일

[학교]	[실습기관]	[학생]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실습기관명: (주)두원전기소방 대표자 또는 담당부서장: 김동욱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과(전공)

서명

확인

2장. 현장실습 홈페이지 사용 안내

현장실습요청서 및 운영계획서 작성(협약서 작성 후 자동생성)_01

- 현장실습실시계획서는 기업에서 계획한 현장실습 커리큘럼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신청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승인 요청(☎043-849-1715,1783)→ 센터 승인 → 신청 완료

현장실습

현장실습요청서 작성

현장실습 소개 및 절차안내

현장실습요청서 작성

현장실습 공지사항

현장실습 자료실

기관_현장실습신청서

실습요청업체현황

사업자 등록번호	ID	
업체(국문기관명)	업체(영문기관명)	
대표 *	*실습요청 업체현황	설립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기존기업)자동생성됨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만 작성	
주소	(신규기업)자동생성됨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 서면점검서 작성	
홈페이지		
기관현황(구분)	상장여부	
근로시간	근로일수	
업종/업태		
사무실(대표자)	팩스	
직원 수	고용보험 가입자 수 *	
연매출액	참가유형	신규신청 서면점검서

관리부서

부서명	서명	
직위	이메일	
연락처	휴대폰	

운영계획서

현장실습 유형 *	학교주도형
참여유형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현행방법 *	서유선발 / 면접선발 / 학교추천선발 등 전형 및 선발방법 기입
전형일자 및 일정 *	협수락일자 ☐ 선택 시 선택 분 ☐ 일정별도협의
	면접일자 ☐ 선택 시 선택 분 ☐ 일정별도협의
	최종선발일자 ☐ 선택 시 선택 분 ☐ 일정별도협의
	참고일정
기타사항	Co-op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특이사항 기입(필요시 기입)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실습학기제(Co-op)운영 기준 절차

[운영기준]
 법제처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참조

[운영절차]
 [학교]Co-op 참여 의뢰(기관주도형의 경우 다음 단계부터) • [현재단계][기관]Co-op 참여 신청 및 운영계획서 확인(승부) • [학교/기관]상호 협의 후 시정 확정 • [학교]Co-op 정보공시 및 교육목 개설 • [학교]학생 신청접수 및 추천 • [기관]학생선발 • [학교]사전교육/수강신청 실시 • [학교/기관/학생]3자 협약체결 • [기관/학교]신제/상해보험 가입 • [기관]운영계획에 따른 실시/출석관리 및 평가 실시 • [학생]보고서작성 • [학교]장직 평정

2장. 현장실습 홈페이지 사용 안내

현장실습요청서 및 운영계획서 작성(협약서 작성 후 자동생성)_02

- 현장실습실시계획서는 기업에서 계획한 현장실습 커리큘럼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신청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승인 요청(☎043-849-1715,1783)→ 센터 승인 → 신청 완료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운영과정 *	☐ 발탁과정 ☐ 학기과정 ☐ 발탁/학기 연계과정			
운영유형 *	☒ 직무제형 ☒ 채용연계형			
과정	2025년도 학년도 겨울방학 학기 2개월 개월			
실습기간	2025.12.03 ~ 2025.12.27			
평균실습기간	8.0시간 / 09시 00분 ~ 18시 00분			
실습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연장실습 여부*	☐ 연장실습 없음 ☐ 상황별 실시 ☐ 주기적/상시적 실시			
산재보험 가입 *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함 (☐ 법적 의무가입 / ☐ 미가입시 운영 불가)			
기타사항	운영 과정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 Y / ☐ N)			
	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입			
실습지원비	평균실습시간	8.0시간 / 09시 00분 ~ 18시 00분		
	교육비율 *	25% (총 80시간)		
	연장실습시간 *	지급기준 시간당 : 원 (*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		
	실습비	2156880 원		
	지급예정일	당월 월 30 일		
기타 지원 사항	현물지원사항 작성 (☐ 식사 ☐ 교통 ☐ 기숙사 ☐)			
현장교육 담당자 *	부서명		성명	
	직위		이메일	
	연락처		휴대폰	
협력교수	성명		소속	
실습직무	부서명 *			
	주소	실습기관 기본 정보* 상의 주소(위치)와 다른 경우 작성		
	직무명 *			
	교육목표 *	Co-op 직무 수행을 통해 학생이 얻게 되는 교육성과 측면 기술		
	직무개요 *	부엌을 예(예제, 미용), 여형제(예제) 아디미지(예제)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할 내용으로만 기입 *실제와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하였거나, 단순 반복적 직무 수행이 확인될 경우 *근로 계약 및 관련 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관련 직무 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함		
운영/지도 계획 (최소 시간 중 교육시간 10% 필수)	1주차	실습계획 *		
	2주차	실습계획 *		
	3주차	실습계획 *		
	4주차	실습계획 *		
	5주차	실습계획 *		
	6주차	실습계획 *		
	7주차	실습계획 *		
	8주차	실습계획 *		
	9주차	실습계획		
학생요건	전공(인원) *	남 여 무관 (OO학과 1명, □□학과 1명 또는 OOO학과/□□□학과 중 1명 등으로 구체적 대상 전공 또는 계열을 특정하여야 함)		
	학년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이상		
	학점			
	요구사항 *	Co-op 참여 학생에게 요구되는 OA역량, 외국어 역량, 지식/기술역량, 전공과목 이수여부 등 기입		
	기타사항			

저장
취소

2장. 현장실습 홈페이지 사용 안내

학생관리(실습중)

지도위원위촉서 작성

- 마이페이지 → 선발자관리 → 실습정보 → 지도위원위촉서 작성

실습정보

X

사용자 정보

종료여부

현재 실습중 ~ 승인 입니다.

협약서 보기

성명

학번

학과

지도위원위촉서

실습일지

출근부

기업설문조사

변경신청서

기업평가

현장실습 확인서

지도위원	업체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서명 *	
	성명 *			
	직급		담당분야	
	연락처			
	E-MAIL			
지도학생	윤태영	지도기간	2026-01-01 ~ 2026-02-28	

개인정보동의

- 개인정보 항목: 업체 및 부서명,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목적: 「2025년도 겨울방학 현장실습」 운영 시 학생 지도 관리

본인은 한국교통대학교 「2025년도 겨울방학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22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부동의

직무 관련 교육(25%)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귀교의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하

지도위원:

서명

신청

2장. 현장실습 홈페이지 사용 안내

학생관리(실습중)

지도위원위촉서 작성

- 마이페이지 → 선발자관리 → 실습정보 → **실습일지 확인**(작성상태 확인·지도)
- 마이페이지 → 선발자관리 → 실습정보 → **출근부 작성**

실습정보

사용자 정보

종로여부

현재 **실습중** 승인 **입니다.**

협약서 보기

성명 윤태영 학번 1976066 학교 청도경영·물류학과

지도위원위촉서

실습일지

출근부

기업실문조사

변경신청서

기업평가

현장실습 확인서

현장실습기간 2026.01.01 ~ 2026.02.28 9주

출석일수

0(0)

결석일수

0

주차

요일

구분

실습사항(교육 및 실습내용)

1주차

(01/01)

실습및 교육

(01/02)

실습및 교육

(01/03)

실습및

지도위원위촉서

실습일지

출근부

기업실문조사

변경신청서

기업평가

현장실습 확인서

총 교육시간 **80시간**

교육시간 **0 시간**

잔여 교육시간 **80 시간**

아전

다음

오늘

2025년 12월

월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선택

출석(교육0시간)

출석(교육1시간)

출석(교육2시간)

출석(교육3시간)

출석(교육4시간)

출석(교육5시간)

출석(교육6시간)

출석(교육7시간)

출석(교육8시간)

결근

휴일

선택

선택

휴일

작성방법

2장. 현장실습 홈페이지 사용 안내

학생관리실습종료 1주전)

- **기업 설문조사** 실시: 마이페이지 → 선발자 관리 → 실습정보 → 기업설문조사
- **기업평가** 실시: 마이페이지 → 선발자 관리 → 실습정보 → 기업평가

☞ > 마이페이지 > 현장실습 > 선발자관리

마이페이지 (기업)

- My 포트폴리오
- All-Set 관리 현황
- 프로그램신청 참여현황
- 캡스톤디자인
- 캡스톤디자인 주제공모
- 현장실습
- 현장실습요청서 작성
- 학생 선발
- 선발자 관리**
- 기업정보 수정

선발자 관리

년도: [선택] 학기: [선택] 성명: [입력] **SEARCH**

년도	학기	성명	학번	학년	모집전공	실습기간	차수	현장실습 신청서	산재보험 확인서	실습정보
								신청서	확인서 업로드	실습정보
								신청서	확인서 업로드	실습정보

이전 < 1 > 다음

실습정보

사용자 정보

종료여부: **현재 실습중** ~ 승인 입니다.

협약서: 보기

성명: 김민기 학번: 2015008 학과: 기계공학과

지도위원위촉서	실습일지	출근부	기업설문조사	변경신청서	기업평가	현장실습 확인서
---------	------	-----	---------------	-------	------	----------

2025년도 2학기 기업 설문조사

2025학년도 2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참여기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참여기관의 의견은 향후 현장실습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매우 만족

실습정보

사용자 정보

종료여부: **현재 실습중** ~ 승인 입니다.

협약서: 보기

성명: 김민기 학번: 2015008 학과: 기계공학과

지도위원위촉서	실습일지	출근부	기업설문조사	변경신청서	기업평가	현장실습 확인서
---------	------	-----	--------	-------	-------------	----------

평가표

① 작성방법: 평가항목별 점수에 V 표기 후 평가 합계 작성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점수					합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실무관련자식	10	8	6	4	2	

Q&A

1. 산업재해보험가입(산재보험)은 필수인가요?

필수입니다. [시행 2018.09.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2018.09.11. 일부개정] 기업에서 학생에게 지급되는 실습지원비로 산재보험료를 측정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습지원비가 0원일 경우 0원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2. 법정공휴일은 출석일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습기간 중 법정 공휴일이 이틀이었다면 실습일수를 이틀 연장하여야 합니다.

3. 회사의 사정으로 실습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어떻게 하나요?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실습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휴가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주 기준 160시간)

5. 실습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정할 수 있나요?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변경요청 하시면 됩니다.

6. 현장실습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국제협력센터 312호입니다.

- 문의 : 043-849-1715 / 1783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시행 2022. 1. 1.] [교육부고시 제2022-1호, 2022. 1. 1., 타법개정]



교육부(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044-203-68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 중 현장실습 수업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 수업방법”(이하 “현장실습학기제”라 한다)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이 고시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영문표기는 ‘Co-op’(Cooperative education)으로 한다.
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이 고시 제2장 및 제4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4.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란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 등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이 가능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기관을 말한다.
5.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란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6.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라 한다)란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별도 법령 등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학교에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1.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등 별도법령에 따른 의무실습 등

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제2장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제4조(운영 원칙)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취지와 목적, 상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1.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수행 기회와 직무수행에 따른 실습지원비 제공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직무능력 사전 검증 및 인력 양성 기회로 활용한다.
2. 학생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통해 관련 산업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의 습득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한다.
3. 학교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전공 관련 현장 직무교육을 실현하고, 산업 현장의 직무 요구사항 및 변화를 학교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
- ②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한다.
- ③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
- ④ 현장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2.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3.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4.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계획
5.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6.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현장실습학기제는 제4항에 따라 학생의 수강신청 등이 완료된 이후 실시되어야 하며,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주어야 한다.

제5조(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①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이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의미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실습시간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경우로 한다.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로 한다.

제6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다.

1.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
 2.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4. 제4조제4항·제5항의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5.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6. 제22조,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7. 제25조제4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8.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서식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학교별 학칙 등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의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7조(학생) ① 현장실습학기제의 학생에 대한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그 밖에 세부사항은 각 학교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1. 수행학기에 개설된 현장실습학기제 과목의 수강신청 등 수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재직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 ②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 고시 및 각 학교의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3. 현장실습학기제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
- ③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관한 교육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학기제 중 보건 및 산업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3. 현장실습학기제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사항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4.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8조(실습기관) ①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수 있다.

1. 학교 주도형: 학교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실습기관을 직접 발굴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실습기관 주도형: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학교를 지정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실습기간 및 실습지원비 등의 여건·지원 사항에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 주도형은 표준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으나, 실습기관 주도형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인 경우만 운영할 수 있다.

③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2.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3.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설비·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
4.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
6. 그 밖에 이 고시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고, 각 학교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것

④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권리
2.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관한 학생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권리
3. 학생 또는 학교로 인하여 운영 기준 및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등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운영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권리

제9조(현장실습지원센터) ①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각 학교별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정·개정 등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전반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
2.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3. 학생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4.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사전 교육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자료 관리
6.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8.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

③ 지원센터는 학생의 전공 분야, 운영계획의 적절성,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전문성,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위생·환경·안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다.

④ 지원센터는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협의·조정을 통해 운영 내용 및 계획을 확정 후 시행한다.

⑤ 지원센터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예 앞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기준, 방법 및 준수사항,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지원센터에서는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전에 서면 또는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 기간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

관이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생산 활동 등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뉴얼에 따라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지원센터에서는 제6항 및 제7항 외 필요한 경우 학생 및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학교장의 의무 등) ① 각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경우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운영 사항의 점검, 실습기관과의 협력관계 및 업무 협의 등 현장실습학기제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 조직구성과 전담인력 배치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책임을 다한다.

③ 각 학교의 장은 제29조의 정보공시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 시 거짓 또는 이 고시에 위배되는 부적격 사항이 제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절차) ① 학교 및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다만, 제30조제4항의 경우 이를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학교 주도형은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실습기관 주도형은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 실시
2.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서 학교 제출 및 실습기관과 학교 간 협의를 통한 운영계획 확정
3. 학교의 실습기관별 운영계획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정보의 학생 공지
4. 학교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접수 및 실습기관에 학생 추천
5. 실습기관의 실습 참여 학생 선발 및 결과통보
6.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및 학교의 사전교육 실시
7.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및 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보호 조치
8. 대학, 실습기관 및 학생 간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9.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10. 학교의 실습기관과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
11. 실습기관의 학생 출석부, 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
12. 학생의 학교별 요구하는 수행결과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
13. 각 학교별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수강 신청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대한 학점 처리
1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대학과 실습기관이 합의하여 정한 절차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 및 선발 시 학교는 전공적합성과 현장실습학기제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습기관에 학생을 추천하고, 실습기관에서 해당 현장실습학기제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와 무관하게 직접 학생을 모집하거나 신청, 접수 받아서는 안 된다.

제12조(운영계획서의 구비)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실습기관 정보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간 및 기간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대상 전공(학과), 계열, 인원 및 학년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내용, 직무교육(지도) 및 세부 운영계획
5. 실습지원비 등 학생 지원 사항
6.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이 아닌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별 운영계획서 서식으로 운영한다.

③ 운영계획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업무협의 시점에 실습기관에서 학교로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을 사전 공지하여 운영한다.

제13조(적합성 검토) 학교에서는 제12조에 따른 실습기관과의 운영계획 협의·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
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관련된 전공(학과) 또는 계열 특성의 관련성 및 적합성 등

제14조(협약) ① 학교는 현장실습학기제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학교, 학생,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별 서식으로 운영한다.

② 실습기관 및 학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및 확정된 운영계획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③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의 사정에 따라 협약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실습 내용 변경 등) ①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학기제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의 무단결석, 실습지도 거부 및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학교 측에 알리고 학교와의 협의 하에 현장실습학기제를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출석관리) ①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공휴일, 제18조에 따른 휴일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현장실습학기제 미 실시 일정을 확인하여,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일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출석관리를 한다.

- ② 실습기관에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출석을 관리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학교별 서식으로 운영한다.
- ③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제 계획된 일정으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실습기관의 출석관리 사항을 점검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실제 출석일로 출석을 관리하되,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대한 학교별 출석인정 기준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휴일 등을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 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주 기준 1일의 휴일은 제외한다.
- ⑤ 제4항 적용 시 제27조의 재택실습은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9조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정보공시 제출 시에는 학교별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과 달리 실제 출석일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 등) ① 실습기관에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별 서식으로 운영한다.

-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평가표 및 출석부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의 제출사항에 대한 이상여부에 대한 검토 후 실습기관과의 해당 현장실습학기제를 마친다.
- ③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시점에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만족도, 건의사항 및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 청취하여 현장실습학기제의 선순환 운영이 되도록 한다.

제18조(학생 보호) ①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함께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 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실습기관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하여 협의하여 실시한다.
- ⑥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소요 일수를 제4항 및 제5항의 휴일 외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1.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
 2.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일
 3.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 다만,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습수행 목적 달성 및 지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협의를 통하여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 실시

⑦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경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도 및 참관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⑧ 제17조에 따른 평가 시 실습기관에서는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⑨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며, 해당 학교는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강요하는 경우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산업 안전·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제19조(학교별 규정) ①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이 고시에 근거하여 학칙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② 학교는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수행 사항을 교원업적평가 등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실습기관 발굴 및 현장점검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20조(자료 구비 등) ①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학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제반서류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 발굴, 모집 등과 관련한 공문 및 공고문 등의 공적문서
2. 실습기관 및 학생별 운영계획 및 협약, 출석 및 평가 관련 서식
3. 참여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 등 학점인정 관련 각종 서류
4.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및 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②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학기별로 참여 학생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관련 정보를 유지 및 관리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학년도, 학기, 국내 및 국외(국가명) 구분
2.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소속 정보(단과대학, 전공), 학번, 이름, 학년
3. 실습기관 정보 및 실습지원비 수령 현황
4.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산재 및 상해보험 가입 사항
5. 현장실습학기제 시작일, 종료일 및 실제 출석일수
6. 수강신청 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및 학점 수 등
7. 그 밖에 학교에서 지원한 사항 등

제3장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제21조(운영 기간 및 시간)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른 학교별 학칙으로 정한 학기별 수업일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1.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인 경우에 한하여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미만이거나, 학교에서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와 다르게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주간 5시간을 넘고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제1항제1호에 따라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시간 기준을 지켜 운영한다.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에 따라 야간에 운영 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와 실습기관은 운영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를 협의한 후 학생이 야간에 운영될 수 있음을 미리 알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실습지원비) ①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이 되는 단위 실습시간 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2.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3.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④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주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2.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3. 실습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기간)에 대하여는 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⑤ 연장·야간 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야간 실습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23조(근로계약) ① 실습기관에서는 제14조에 따른 협약 체결 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 문제 예방 등 학생보호 조치 목적 등으로 해당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시 학교와 협의 후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은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과 범위에서만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범위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다른 기준으로 체결할 수 없으며, 이외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24조(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국외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하되, 그 밖에 사항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조항에 따라 운영한다.

1.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의 구성 요건을 포함한 학교별 운영계획서 및 출석·평가표로 운영할 수 있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구성 요건을 포함한 국외 실습기관과 협의한 문서 또는 서신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실습지원비는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 또는 제22조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국가에 최저임금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임금 수준 및 물가 비교 등을 고려한 기준을 세워 시행할 수 있으나, 국내 실습기관에서 국외 지사 등으로 파견하는 형태 등 실습지원비의 소득처리가 국내에서 이뤄지는 경우의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국내·국외 실습지원비 기준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4.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국가에서 정한 비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장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제25조(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① 각 학교에서는 제3장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과 달리 해당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학교 자율적 기준으로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기간 및 시간 기준은 제21조 범위에서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경우의 실습지원비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제22조의 실습지원비 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교에서는 전공 교과체계에 따른 관련 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실습기관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학교에서는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강 및 등록하여 수업의 하나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일련의 과정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 학생의 교육목적 및 학사 일정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 전 구체적인 학습사항 및 일정이 확정되고 이를 학생이 충분히 확인 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일련의 과정 및 학생이 수행하는 사항은 학생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학생의 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으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이거나, 즉각적인 유익이 있어야 한다.
5. 일련의 과정 및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을 소속 근로자의 대체 인력 또는 추가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학생에게 실습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 업무 수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
6.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숙된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 체험 등 직무 체험(Job Shadowing) 형태를 주된 과정으로 하여 참여하여야 하고,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업무의 체험은 학생의 학습적 유익에 한정되어 일회성 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
7.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 상호간에 사전 동의되어야 한다.
8.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기준 등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5장 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제26조(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일시 중단 또는 복교, 휴학 등 학생 안전 및 보호에 우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일시 중단의 경우 현장실습학기제의 지속 운영 및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추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복교에 따른 중단 시 학교별 규정에 따른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출 경우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점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체실습 교과 등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거나, 학생이 희망할 경우 휴학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재택실습) ① 국가재난 발생 시, 현장실습학기제 지속 운영 필요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재택실습 기간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
2. 재택실습 실시 시 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의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실습기관의 요청서류를 갖추고,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실습을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또는 근무) 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인 경우 2. 실

습기관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재택근무 여건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3. 학생, 실습기관, 학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제28조(대체실습 교과목 운영) 재난 상황에 따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상 또는 콘텐츠 활용 교육, 교내실습 등으로 바꿔 운영하고자 할 경우 집중수업 형태의 별도 대체실습 교과목 수강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학교에서는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수강취소 등의 조치 후 운영하여야 하며, 대체실습을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의 운영기간 및 학점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6장 지도·감독 등

제29조(정보공시 연계 등)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고등교육기관의 정보공시는 실제 출석일을 기준으로 20일 이상 운영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대상으로 하며, 그 결과는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정보공시 대상으로 하지 않으나, 실태조사는 실시한다.

- 제30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학기제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실태 등에 관한 지도·점검 계획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등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각 학교에서 이 고시를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 제60조에 따라 처리하며, 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확산을 위해 별도의 사업 또는 조직(협의체) 등의 지정·운영을 통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각 정부부처 등"이라 한다)은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 현장실습 계획을 세운다.
1. 정부차원의 혼선 방지와 국가차원의 표준화되고 일원화된 운영을 위해 각 정부부처 등에서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형태가 포함된 재정지원사업 등은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 정부부처 등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점인정과 무관한 일경험수련 과정으로 운영한다.
 3. 제1호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할 경우 각 정부부처 등에서는 지원비(이하 "국고 및 지방비") 지급 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표준화된 지급 수준으로 한다.
 4. 제3호에 따른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 방법은 실습기관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실습기관이 해당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 제3호에 따른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학교는 해당 금액을 실습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정부부처 등의 재정지원사업에서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 시

기와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31조(기타) 이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실습기관 지원 및 현장실습학기제의 활성화 방안, 각 조문에 대한 세부 운영 사항 및 설명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1호, 2022.1.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시행 2018. 9. 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2018. 9. 1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생의 성명
2. 현장실습생의 훈련(실습) 수당
3. 직업교육훈련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상함에 있어 임금총액 산정시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보험가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총액에 당해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④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

부칙 <제2018-69호, 2018.9.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SINCE 1905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학일자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

krise.ut.ac.kr

주소

27469 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50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대학일자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국제협력센터 312호)

대표전화

043-849-1715, 1783 / 043-841-5567